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9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5배로 상향〉
■ 김동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040호)

2024. 11.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문위원 유 인 규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5배로 상향	2
※ 참고자료	10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주요 도입 현황	10
2. 수탁·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비교	11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동아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 2024. 9. 13.
3. 회부연월일 : 2024. 9. 1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분쟁조정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도(2,846건) 대비 22%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일반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등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실제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및 기술 탈취가 발생하더라도 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보다는 대기업의 우월적 지위에 의한 불공정행위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에 손해배상 범위 또한 상한선만 명시되어 있어 손해배상 범위가 억제력과 실효성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거래를 통한 부당이득을 억제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여 중소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안 제40조의2제2항제1호·제2호).

Ⅲ. 검토의견

1.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5배로 상향

개정안은 위탁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시 현행 3배 이내 또는 5배 이내에서 5배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40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생략)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u>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u>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 <u>손해의 5배</u> <u>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u> ----- ----- -----.
1. <u>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u>	<삭 제>
2. <u>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u>	<삭 제>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악의적이고 반사회적인 불법행위를 징벌하여 장래 유사행위의 재발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고액의 배상책임을 부과하는 제도임. 불법행위에 대한 통상적인 민사 손해배상이 손해의 공평한 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적 손해배상을 원칙으로 하는 것과 달리, 징벌적 손해배상은 손해배상이라는 민사적 구제수단에 징벌이라는 형사적인 요소를 결부시킨 제도라 할 수 있음¹⁾.

우리나라에서는 2011년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최초로 도입된 이후 주로 불공정거래, 제조물사고, 환경성질환 유발행위 등을 제재 내지 억제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제한적으로 도입되어 왔음(참고자료 1).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에 기술자료, 영업비밀 등의 침해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으며, 최근 현행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 이내에서 5배 이내로 상향하는 것으로 개정²⁾된 바 있음.

1) 정우영·김신영·김지안, “우리나라 징벌적 손해배상제 판례분석 및 활용상 한계와 개선방안”, 한국법학원(법무부 연구보고서), 2020.6, p6

2) 현행법은 수탁기업의 납품대금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위탁기업이 불이익조치(보복행위)를 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이내)를 도입(법률 제16290호, 2019. 1. 15. 개정, 2019. 7. 16. 시행)하였고, 이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하여도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을 적용(법률 제18431호, 2021. 8. 17. 개정, 2022. 2. 18. 시행)하였으며, 최근에는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를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일반 불공정거래행위 중 일부에 대하여도 추가 적용(3배 이내)되도록 개정(법률 제19989호, 2024. 1. 9. 개정, 2024. 7. 10. 시행)된 바 있음.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는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등의 불공정 거래행위의 경우에는 3배 이내로,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사항의 경우에는 5배 이내로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한도를 구분하여 적용하고 있음. 현행법의 수탁·위탁거래에 포함되는 하도급거래³⁾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도 최근 개정⁴⁾을 통해 기술자료 유용행위와 관련한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상향함에 따라 두 법률의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은 대부분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음.

[표 1] 현행법, 하도급법 및 개정안 비교

현행				개정안
구분	상생협력법	하도급법	한도	
일반 불공정 거래 행위	- 제25조제1항제1호(부당한 물품등 수령거부 및 납품대금 감액) - 제25조제1항제3호(현저히 낮은 납품대금의 결정) - 제25조제1항제7호(정당한 사유 없는 발주 감소·중단 금지) -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1) 및 같은 호 나목(보복조치)	- 제8조제1항제2호(납품 수령·인수 거부, 지연), 제11조(부당한 대금 감액) - 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 제8조제1항제1호(위탁 임의취소·변경) - 제19조(보복조치) - 제10조(부당반품)	3배 이내	5배
기술 자료 유용 행위	- 제25조제2항(기술자료 유용행위) -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보복조치)	제12조의3제4항(기술자료 유용행위)	5배 이내	

주: 2024년 개정(밑줄 표시)을 통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이 추가로 적용 중임.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제출자료를 재정리

3) 현행법의 수탁·위탁거래는 하도급거래를 포함하여 보다 넓은 범위에 적용됨(참고자료 2).
 4) 법률 제20366호, 2024. 2. 27. 개정, 2024. 8. 28. 시행

개정안은 현행법의 적용 수준을 더욱 강화하여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 및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구분 없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손해의 5배로 고정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이에 따르면 일반 불공정거래 행위의 배상책임은 현행 3배 이내에서 5배로, 기술자료 유용행위 관련 배상책임은 현행 5배 이내에서 5배로 상향 적용하게 됨.

그동안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분쟁조정은 증가⁵⁾하고 있는 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 이후 상당 기간이 지났음에도 관련 판례의 수와 청구의 인용률이 낮고 제도의 과소집행 문제가 제기되어 왔음⁶⁾. 특히 손해배상액이 불충분할 경우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실질적 피해구제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⁷⁾, 중소기업에 대한 실효적 보호를 위하여 징벌 배수를 더욱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⁸⁾.

5) 2023년 전체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3,481건으로, 전년(2,846건) 대비 22% 증가하였고, 이 중 일반 불공정거래 분야가 1,372건, 하도급거래 분야가 1,044건, 가맹사업거래 분야가 605건 등으로 나타남.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전년도(1,085건) 대비 26% 증가하였으며, 분쟁조정 신청사유로는 기타의 불이익 제공 행위(1,067건, 77.8%), 거래거절 관련 행위(78건), 사업활동방해 관련 행위(26건) 등이 제시됨(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분쟁조정 현황 발표」, 2024. 2.)

6) 김차동, “하도급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집행상 문제점과 그 실효성 제고방안”, 법학논총 제33권 제4호, 2016. 12, p228; 김정환,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정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9. 8, p220-221; 김현수,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개선에 관한 고찰”, 한국재산법학회 제36권 제4호, 2020. 2, p211, 정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제25권, 2022. 3, pp224-229, 233

7) 2021년 기술침해와 관련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결(2배 적용)의 청구액 대비 인용액은 10% 수준에 불과하였음. 100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법원(2심)은 손해추정액 5억원에 징벌배수 2배를 적용하여 10억원을 판결하였음(서울고등법원 2021. 12. 23. 선고 2020나2032402 판결).

8) 기술침해에 대한 민사적 손해배상액 입증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인정되는 원 손해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3배 배상제도가 무색해질 수 있으므로, 근본적으로 침해 입증을 쉽게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이러한 보완장치가 마련되고 법집행이 강화되기 전까지 10배 배상제도가 유용할 수 있다는 견해도 존재함(손승우, “10배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의 필요성 검토”, 2019년 중소기업기술보호 컨퍼런스 자료집, 2019. 8, pp15-20).

따라서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전보 및 억지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목적은 타당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다만, 불공정 거래행위 등 법률 위반행위의 유형, 피해규모 등이 매우 다양할 수 있는 상황에서 그 위반행위의 경중, 책임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동일하게 5배의 배상책임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현행법 제40조의2제3항⁹⁾에 따르면, 법원이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이러한 사항에 대한 고려 없이 손해의 5배로 배상액이 정해질 것임¹⁰⁾.

9) 제40조의2(손해배상책임) ② 위탁기업이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기업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7호·제14호가목1) 또는 같은 호 나목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

2. 제25조제1항제14호가목2) 또는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5배 이내

③ 법원은 제2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수탁기업과 다른 사람이 입은 피해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위탁기업이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개선요구, 시정권고 또는 시정명령의 내용 및 공표 여부
- 4의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처벌의 정도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6. 위탁기업의 재산상태
7. 위탁기업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

10) 개정안이 입법되면 현행법 제40조의2제3항은 적용의 여지가 없어지므로 삭제해야 할 것임.

또한, 현행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2019년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최초 도입, 2022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3배 이내) 도입, 2024년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5배 이내)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확대 적용(3배 이내) 등의 경과를 거쳐 왔음. 특히 기술자료 유용행위 및 일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도 변경은 2024년 개정사항(2024.1.9. 개정, 2024.7.10. 시행)이므로, 시행 이후 불과 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다시 법률을 개정할 시급성이 있는지 판단할 필요가 있음¹¹⁾.

한편, 현행법의 위탁기업에는 중소기업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위탁기업이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5배의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해 보임.

참고로, 현재 징벌적 손해배상규정을 두고 있는 다른 입법례의 경우, 배상 수준을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한 경우가 일반적이고, 자동차제작자 등의 악의적 불법행위 억지, 신용정보회사 및 개인정보처리자 등의 책임성 강화 등 사안에 따라 손해액의 5배 이내로 규정한 입법례가 있음. 최근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¹²⁾」에서도 손해액

1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활용률 저조에 대하여는 기술 침해행위 입증의 어려움, 낮은 손해배상 기준액(법원 인정) 등 배상배수 상향 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지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도 있어 보임.

12)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해당 사업주, 법인 또는 기관이 중대재해로 손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의 5배 이내 배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5배 고정 배상책임을 적용한 우리나라 입법례는 없는 상황임. 다만, 3배 고정 배상책임을 규정한 미국 「클레이튼 독점금지법」 등의 외국 입법례가 있음¹³⁾.

[표 2]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5배 이내로 적용한 국내 입법례

법 률 명	배상 한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3배 이내, 5배 이내
개인정보 보호법	5배 이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자동차관리법	5배 이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5배 이내
특허법	5배 이내

법인 또는 기관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3) 「클레이튼 독점금지법」(Clayton Act)(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번역)

제4a조. 정부의소송; 손해배상액; 지연손해금

연방정부가 독점금지법의 규정에서 금지하는 대상으로 인하여 영업상 또는 재산상 해를 입는 경우에는 분쟁액을 불문하고 피고가 거주하거나 발견되거나 대리인이 있는 지역의 연방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손실액의 3배와 소송비용을 손해배상 받을 수 있다. 법원은 이 조에 의하여 미국정부에 의하여 지체없이 행해진 신청에 따라서, 독점금지법상 청구내용을 기재한 미국정부의 소장송달일부터 판결일까지의 기간 또는 법원이 정황상 더 짧은 기간동안의 이자의 지급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중의 실손해액에 기한 單利를 수여할 수 있다. 법원은 이 조의 규정에 의한 일정 기간동안의 이자의 지급에 대한 정황상 정당성을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한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 4a. Suits by United States; amount of recovery; prejudgment interest

Whenever the United States is hereafter injured in its business or property by reason of anything forbidden in the antitrust laws it may sue therefor in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in which the defendant resides or is found or has an agent, without respect to the amount in controversy, and shall recover threefold the damages by it sustained and the cost of suit. The court may award under this section, pursuant to a motion by the United States promptly made, simple interest on actual damages for the period beginning on the date of service of the pleading of the United States setting forth a claim under the antitrust laws and ending on the date of judgment, or for any shorter period therein, if the court finds that the award of such interest for such period is just in the circumstances. In determining whether an award of interest under this section for any period is just in the circumstances, the court shall consider only—)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 부처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함.

먼저, 중소벤처기업부는 배상 한도 없이 5배로 배상책임을 고정하는 것은 국내 입법 사례가 없고, 과잉 처벌 등이 우려되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 보호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상액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규모 등 개별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법무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결정사안이라고 보면서도, 최근 개정을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가 확장되거나 배상한도가 상향된 바 있고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지 수개월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동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기존 법률의 시행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 6788-5467

【참고자료】

1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주요 도입 현황
---	---------------------

분야	법률명	주관적 요건	한도	대 상	시행 연도
공정 거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5배	부당한 대금결정·위탁취소, 부당반 품 및 감액(3배), 기술자료 유용행 위(2024년 3배→5배 개정)	2011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허위정보제공 상품·용역 공급의 부당 중단 등	2019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구입 강제, 경제상 이익제공 강요 행위	2016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대규모유통업자의 정당한 이유 없 는 상품 반품 등	2019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부당공동행위(담합) 등	2019
축산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법 위반행위(허위 · 과장광고 등)	2020
상생	대 · 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고의, 과실	3배 5배	납품대금 조정신청 등을 이유로 한 보복행위(2019), 일부 불공정행위 (2024), 기술자료 유용행위(2022년 3배 도입, 2024년 3배→5배 개정)	2019
개인 정보	개인정보보호법	고의, 중과실	5배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23년 개정, 3배→5배)	2016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중과실	5배	신용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 (2020년 개정, 3배→5배)	2015
소비자 안전	제조물 책임법	고의	3배	제조물 결함 관련 악의적 불법행위	2018
	환경보건법	고의, 중과실	3배	환경유해인자로 발생한 환경성 질 환 등 손해	2019
	자동차관리법	고의	5배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발생한 생 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2021
노동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백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14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명백 고의	3배	차별적 처우의 반복	2014
	중대재해처벌법	고의, 중과실	5배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 대재해 발생	2022
특허	특허법	고의	5배	타인의 특허권, 전용실시권 침해 (2024년 3배→5배 개정)	2019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5배	영업비밀 침해행위(2024년 3배→5 배 개정)	2019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고의	3배	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2020
	상표법	고의	3배	상표권, 전용사용권 침해	2020
	디자인보호법	고의	3배	디자인권, 전용실시권 침해	2020
공익신고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	고의, 과실	3배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로 인한 손해	2018

자료: 김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적절한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사법정책연구원, 2019.8, pp198-199)를
토대로 작성

2

수탁·위탁거래 및 하도급거래 비교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 간 거래의 경우 하도급거래는 원사업자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보다 매출액 규모가 커야 하며, 수·위탁거래는 규모의 기준이 없음

○ 하도급은 7가지 거래 적용, 수·위탁은 30가지 거래로 교차거래 가능

※ 30가지 수·위탁거래 유형에 7가지 하도급거래 유형이 포함

구 분	상생협력법 (위탁기업-수탁기업)	하도급법 (원사업자-수급사업자)																					
정의	■ (위탁기업) 제조, 판매,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 (위탁내용)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 또는 기술개발을 위탁하고, ■ (수탁기업) 그 제조 등을 위탁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거래	■ (원사업자) 원사업자가 ■ (위탁내용)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가공위탁 포함)·수리위탁·건설위탁 또는 용역위탁하고 ■ (수급사업자) 그 위탁을 받은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인도 또는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행위																					
규모 제한	■ 위탁기업의 규모제한 없음 * 단,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조사(상생법 제27조)와 관련하여 위탁기업이 중기업 이상일 것 요구	■ 중소기업이 아닐 것 ■ 중소기업인 경우: (매출액)원사업자>수급사업자 * 단, 일정 매출액 이하 중소기업 제외: 제조·수리위탁(30억원 미만), 건설위탁(45억원 미만), 용역위탁(10억원 미만)																					
예 시	· 대기업→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O): 중견기업법 §13 · 대.중견기업→중소기업 (O) · 중견기업→중견기업 (x) · 중소기업→중소기업 (O) * 소기업이 위탁기업일 경우 수·위탁거래에는 해당되나 직권조사(상생협력법 제27조) 및 제재대상에서 제외	· 대.중견기업→중소기업 (O) · 대기업→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또는 2조원 초과 중견기업→8백억~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 대금지급에 한해 하도급거래 인정 (하도급법 §13)																					
위탁기업 (원사업자)과 위탁 내용의 관계	■ 위탁기업과 위탁내용의 관계가 30가지 가능 * 제조^①, 판매^②, 수리^③, 공사^④, 가공^⑤, 용역^⑥ (6) X 제조^①, 수리^②, 공사^③, 가공^④, 용역^⑤(기술개발 포함) (5) = 30가지 * (예시) 제조업자→제조위탁 (O) - 용역업자→제조위탁 (O) - 제조업자→공장건설위탁 (O)	■ 원사업자와 위탁내용의 관계가 7가지로 제한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원사업자</th><th>수급사업자</th></tr> </thead> <tbody> <tr> <td rowspan="4">제조위탁</td><td>제조</td><td>제조</td></tr> <tr> <td>판매</td><td>제조</td></tr> <tr> <td>수리</td><td>제조</td></tr> <tr> <td>건설</td><td>제조</td></tr> <tr> <td>수리위탁</td><td>수리</td><td>수리</td></tr> <tr> <td>건설위탁</td><td>건설</td><td>건설</td></tr> <tr> <td>용역위탁</td><td>용역</td><td>용역</td></tr> </tbody> </table> * (예시) 용역업자→제조위탁 (X) - 제조업자→공장건설위탁 (X)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구분	원사업자	수급사업자																					
제조위탁	제조	제조																					
	판매	제조																					
	수리	제조																					
	건설	제조																					
수리위탁	수리	수리																					
건설위탁	건설	건설																					
용역위탁	용역	용역																					
제한 사항	■ 위탁기업의 업과는 무관한 물품 등의 제조, 수리, 공사, 가공, 용역을 위탁할 수 있음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엔진제작 위탁 (O) - 자동차제조업자→작업복제조 위탁 (O)	■ 원사업자의 '업에 따른' 물품의 제조·수리, 건설, 용역수행 행위를 위탁할 것 * (예시) 자동차제조업자→엔진제작 위탁 (O) - 자동차제조업자→작업복제조 위탁 (X)																					